

##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고찰\*

김선정\* 단국대학교·최해리\*\* (사)한국춤문화자료원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무용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고찰하여 무용분야의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무용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한국의 전통무용은 한국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에서 생성 및 재창조된 춤으로 한국의 민족무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전통무용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계통을 이루며 전승된 춤으로 그 형식과 체계가 우수하여 예술적, 학술적, 대중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춤을 의미한다. 둘째, 퍼실리테이션(집단 참여 토론을 통한 의견 수집 및 종합), 전문가 심층면담, FGI(Focused Group Interview, 표적 집단면담)를 활용하여 무용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무형유산으로서의 전통무용에 대한 범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용의 전승 기간 인정에 대해 100년에서 70년으로 조정하는 등 수치적 완화가 필요하다. (2) 근대 이후 발생한 신무용, 한국창작춤, 신전통춤 등 전통춤에 기반한 다양한 창작춤을 전통춤으로 수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용분야의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무용계의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며, 무형문화재 종목의 선정 기준인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무용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통무용 개념, 전통무용 범주

### I. 서론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를 주장했던 베네딕트 앤더슨의 언설 이후로 학자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탄생해 무한한 미래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상상되는 실체가 불분명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왕조 중심의 봉건 체제에 놓였다가 일제강점과 해방 이후에 전쟁, 분단, 독재정권, 민주화 등 정치적 변혁 체제를 여러 차례 겪고, 압축적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에서 국가, 민족, 전통 등의 개념은 허상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사회학자 이하나(2013:15)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충성심이 강하며, 충성을 표하는 대상은 항상 ‘우리’라는 공동체”라고 주장하며, 근대 이후 한민족의 충성심은 구한말까지는 이씨 왕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분단기에는 좌우 공동체, 분단 이후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한 내에서도 정권에 따라 분열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분열증상은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예

\* 이 논문은 2021년 문화재청의 연구과제 「‘전통무용’분야 역사문화자원 조사 용역연구」를 수행한 (사)한국춤문화자료원이 과제의 일환으로 개최했던 ‘제1차 전통춤의 전승방안 토론회: 전통무용의 개념, 범주, 분류체계’(2021년 7월 30일, 온라인)에서 주저자가 발표했던 “전통무용의 범주에 관한 고찰”을 수정 및 발전시킨 것이다. 제2장과 제3장의 연구자료는 (사)한국춤문화자료원의 2020년 문화재청의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전통무용’ 분야 종목 전국 자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무용과 교수 dance@hanmail.net

\*\*\* (사)한국춤문화자료원 이사장 haereec@kakako.com

술가와 예술가 집단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무용계에서 전통의 개념은 고정된 실체에 가까우며, 학술논문들에서 이와 같은 언술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사)한국춤문화자료원(2020)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석·박사학위논문에서 추출한 ‘전통무용’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통(傳統)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 문화사고와 행위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뜻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과거로부터 전해진 문화유산을 말함. 즉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것, 변화하면서 변치 않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음
- ▶전통무용은 일정한 체계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어 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 예술로 삶의 본질에서 나온 민족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전통문화라 할 수 있음
- ▶전통무용의 본질적인 성향을 한국 민족의 생활습관과 인식, 그리고 관습과 도덕적인 관념으로부터 발전되어져 우리 민족과 함께 생성, 보존되어 온 것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의하여 발전되고 후손들에 의하여 보존 계승된 춤을 의미함

위의 설명문에서 나타나듯이 전통무용에 대한 무용연구자들의 인식은 “실체 불분명한 공동체”인 ‘민족’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으며, 전통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변화하지 않는 실체”로 파악한다. 즉, 전통무용은 실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계승 및 발전되어 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특정할 수 없는 실체”이므로 전통무용에 대한 무용계의 분열증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30여년 만에 이루어질 국가무형문화재 춤종목의 신규지정을 앞둔 문화재청으로서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무용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의 연구과제를 공시하고, 조달청을 통해 수행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춤종목의 신규지정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어느덧 60년이 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이후 무형문화재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두고 1964년부터 1998년까지 96명의 춤 관련 예능인을 조사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는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무대화된 춤종목을 포함하였다. 또한 1954년 창작된 김백봉의 부채춤은 2014년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이때부터 전통무용의 역사적 시간의 수용범주에 대하여 무용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극장무대를 의식하여 재창작된 전통무용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20세기 중반에 창작된 무용들이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이 없었으므로 원형 및 전형에 대한 문제 제기과 전통춤의 진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춤종목의 확대 및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전통무용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춤종목의 신규지정을 위한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주를 재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고찰’이 뜻하는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제도와 관련하여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위를 고찰하는 선행연구들은 이미 다수 존재한다. 김선영(2004)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정책 및 현황에 관한 연구」와 동일 인물인 김선영(2007)의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방안: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백제화(2005)의 「한국전통무용가들이 인식하는 춤의 특징에 관한 철학적 연구」, 정인호(2014)의 「한국 전통춤 사위 용어의 특성 및 표준화 탐색: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을 중심으로」, 장수민(2017)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전승 고찰: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이승주, 공상희(2018)의 「국가무형문화재 범주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황희정(2017)의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의 양립 가능성 연구」, 신민서(2020)의 「전통무용의 저작권 보호와 한계에 관한 연구」, 박미(2021)의 「무형문화재 무용의 전형 연구」 등이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무형문화재 제도 그 자체 혹은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과 보존 방안에 집중하며,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는 사전적인 정의에 의존하거나 기존연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법령 고찰과 무용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무용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전통무용의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무형문화재 법령 고찰을 통한 '전통무용'의 개념 정립

### 1.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법령 변화 추이

의인승계(依人承繼) 혹은 구전심수(口傳心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전통춤의 교육과 전승은 사람의 몸이 중심이다. 춤은 사회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인간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반영하며, 노쇠 및 소멸하기 마련인 몸을 통해 표현, 교육, 전승, 보전 활동을 펼쳐간다. 동일한 춤도 인간마다 다르게 표현되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전승 및 보존되는 춤이라도 변화는 필연적이다. <표 1>은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변동 사항(이미희, 김운미, 2016:41)과 원형과 전형에 대한 논의(박미, 2018, 2021), 그리고 역사적 시간의 수용범주에 대한 논의를 집약한 것이다.

표 1.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변동 사항

시기	내 용	비 고
1962.1.10.	문화재보호법 제정, 공포	• 제정 법률 제961호
1964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종묘제례악) 지정	
197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	• 기능과 예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 및 보존하고 이를 실현하는 자 •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1982	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 및 전수교육의무 부과	• 보유자 → 보유자후보/악사/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 전수생 (전수교육조교로 단일화, 1993)
1983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	
1986	보유단체 인정	
1990	무형문화재 담당부서(무형문화재과) 설치	
1994	이수증 발급 권한을 보유자에게 위임	•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 전수생
1998	이북 5도 문화재보호규정 제정	• 이북 5도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다호의3
1999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의 기본 원칙을 '원형 유지'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	•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명칭변경) •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청으로 승격 및 분리
2001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수립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유네스코 보호협약'이라 함)	• 국제적인 관계와 상호 영향 속에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문화재보호법 진행
2009년	학술용역을 통해 '무형문화재 조사 평가 지표 및 매뉴얼개발 실시	
2010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인정	
2014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 무형유산 전문기관의 출범으로 국제적 무형유산 정책 환경에 적극적 대처
2015	보유자 및 보유단체 비인정 종목 지정(아리랑)	•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기 위하여 보유자가 없이 무형문화재 지정 가능
201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재법으로 전통문화를 보존 및 국민의 문화향상을 도모	• 중요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변경 •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관리한다. • 소멸할 위험이 있는 종목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범위 확대(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 어로 등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ul>
2020.6.9.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 제17404호/ 2021.06.10.(시행)</li> </ul>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무형문화재 춤종목의 지정은 제도상 변화를 거듭해 왔다. 〈표 2〉에서는 무형문화재 춤종목 지정 현황에 따른 특이사항을 살펴보았다.

표 2. 무형문화재 ‘전통무용’ 지정 현황에 따른 특이사항

무형문화재 제도	무형문화재 춤종목 지정(지정 번호)	비고(특이사항)
국가무형문화재	1967년 진주검무(국가 제12호) 1968년 승전무(국가 제21호) 1969년 승무(국가 제27호) 1971년 처용무(국가 제39호) 1971년 학연화대합설무(국가 제40호) 1988년 태평무(국가 제92호) 1990년 살풀이춤/ 도살풀이춤(국가 제9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무용’ 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1990년을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한 건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li> </ul>
시지정 무형문화재	2014년 한량무(서울 제56호) 2015년 살풀이(서울 제46호) 1972년 동래학춤(부산 제3호) 1994년 동래고무(부산 제10호) 2005년 동래한량춤(부산 제14호) 1995년 대구살풀이(대구 제9호) 2015년 정소산류 수건춤(대구 제18호) 2004년 승무(대전 제15호) 2012년 살풀이(대전 제20호) 2012년 입춤(대전 제21호) 2002년 범패와 작법무(인천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2년 ‘동래학춤’ 지정을 시작으로 최근 2015년까지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li> </ul>
도지정 무형문화재	1991년 승무, 살풀이춤(경기 제8호) 2000년 안성향당무(경기 제34호) 2011년 경기검무(경기 제53호) 2015년 경기고깔소고춤(경기 제56호) 1979년 한량무(경남 제3호) 1991년 진주포구락무(경남 제12호) 1997년 진주교방굿거리춤(경남 제21호) 1996년 호남살풀이춤(전북 제15호) 2011년 한량무(전북 제44호) 2013년 호남산조춤(전북 47호) 2013년 예기무(전북 48호) 2014년 전라삼현승무(전북 제52호) 2000년 승무(충남 제2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형문화재 춤종목 현황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지정받은 9개 시·도 외에 8개 시·도는 춤종목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무형문화재 춤종목 발굴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li> </ul>
이북 5도 무형문화재	2001년 평안검무(평남 제1호) 2014년 부채춤(평남 제3호) 2011년 화관무(황해 제4호) 2018년 함북선녀춤(함북 제3호) 2018년 평남수건춤(평남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춤지정에 관한 원형과 신무용 지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전승, 보존 연구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li> </ul>
다수의 보유자 지정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종목별로 각각 1명, 4명, 4명을 보유자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무형문화재 위원회는 무용 3종목에 “장기간 보유자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하여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li> </ul>

〈표 2〉를 토대로 무용분야의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을 마지막으로 30년간 '전통무용' 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한 건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능 종목에서도 음악(29), 무용(7), 연희(16), 놀이(7)와 의식(24), 무예(1) 분포도를 확인하여도 무용 분야 지정이 타 분야와 비교하여 적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및 기지정 무형문화재들은 '전통무용'의 시기와 범주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고려 사항들을 내포한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두고 1964년부터 1998년까지 96명의 춤 관련 예능인을 조사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의 대상에는 일제강점기에 극장 무대를 의식하여 재창작된 전통무용 종목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특히 조사대상에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무대화된 춤종목을 포함하였으며, 이후 이 춤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은 개인의 예술적 역량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전통무용이 무형문화재로서 그 원형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극장 무대를 의식하여 재창작된 전통무용 종목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살풀이춤은 한성준 개인에 의해 창작되고 결정된 춤이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문화 발전되어 궁중무와는 별도로 기방의 예술인들에 의해 추어졌던 민속무가 한성준에 의해 면밀히 전승됐으며, 지금의 살풀이춤은 그의 손녀 한영숙에 의해 예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여성적인 춤으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정재만, 1993:428).

또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였던 한영숙 역시 자신이 전수 받은 춤을 자신에게 맞추어 수많은 재창조의 작업을 하고, 앞서 언급한 시대적 무용의 흐름에 따라 재정비되면서 만들어진 창작춤의 세계에 의해 독자적인 춤사위와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살풀이 및 제97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이매방의 인터뷰에서도 "예능보유자 자신이 기존의 춤을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다듬어 나가기 위해 춤사위의 형태나 구성 등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적 근거를 보았을 때 그것이 오늘날 전통춤의 바탕이 되었고, 한국무용에 있어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무형문화재 운영 현황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지정받은 9개 시·도 외에 8개 시·도는 아직 춤종목에는 지정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서문현, 2017:24). 20세기 중반에 창작된 무용 종목들이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진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넷째, 2014년 김백봉의 부채춤은 1954년 창작된 창작무용이지만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즉,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은 원형 개념을 벗어나 원형에서 파생된 전형을 포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대 시기의 춤종목도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무용, 신전통춤, 신경향의 춤 및 전통기반 창작 춤 등 전통춤을 변용한 춤의 인정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무용인 전반의 논의되는 내용으로 언제 가는 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대의 변화 속에 무형문화재 '전통무용' 재인식에 관한 문제이다.

다섯째, 전통춤이 아닌 유사 항목이라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의 지정을 시작으로 보유자 없이 종목만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보유자가 없이 무형문화재 지정은 '전통무용' 범주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2019년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장기간 보유자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하여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무형문화재 개인 종목인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에 대해 각각 1명, 4명, 4명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2020년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을 변경(공포:20.6.9/법률 제17404호/2021.06.10.(시행))하고 '처용무'(국가 제39호)의 전수교육사를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대적 추이를 살펴볼 때, 무형문화재의 전통무용은 원형 개념을 벗어나 원형에서 파생된 전형을

포함하며, 무형문화재 지정은 근대 시기의 춤종목도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사)한국춤문화자료원, 문화재청 결과보고서, 2020).

## 2.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무용 개념 정립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 2018, 2020) 제2조 1항 2호의 내용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무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인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춤을 말한다((사)한국춤문화자료원, 문화재청 결과보고서, 2020). 2003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보호협약(이하 유네스코 보호협약)이 발효된 이후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유네스코의 방향과 부합해가고 있다. 특히 2020년 1월 9일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즉 2021년부터 무형문화재 지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유네스코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보호협약에 대한 이해와 이 규정에 따라 전통무용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유엔 체제 안에서 문화 분야에 특별한 사명을 지닌 단일 전문기구로서 회원국들이 자국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만들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ICH협약)은 문화유산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2003년 제32회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무형문화유산은 구전 전통, 구전 표현물,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기술 등을 말한다. ICH협약은 무형문화재를 객관적이고 규격화된 실체인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 전통, 삶의 방식 등 우리가 무언가에 속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ICH협약은 “등재 신청 파일(nomination file)에 신청 대상의 이력이나 그 기원 또는 고대성(antiquity)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여 객관적 시간성/역사주의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통’의 개념을 “대대로 전승되고 있으며, 환경과 자연과의 상호작용 및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커뮤니티와 그룹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제2조 1항의 c절) 되는 것으로 명기하여 세대 간 전승, 소통의 과정, 동시대성을 강조한다. 즉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춤은 고정적인 지역 분류에 얽매이기보다 포괄적인 춤문화현상으로 간주하며, 이동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배타적 소유권과 저작권을 특정인 혹은 특정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개념과는 거리를 둔다(예: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와의 공조 중단). 그리고 ICH협약은 미학적이거나 예술적 가치판단이 부여되지 않은 다양한 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즉 배타적 분류체계에 의한 인위적 항목 구분을 피하고 내부자적 관점을 강조하며 하나의 요소가 복수의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춤문화현상을 외부에서 미리 규정한 분류틀에 맞추어 재단하기보다 그 문화현상이 가진 복잡하고 풍부한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종합적으로 ICH협약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재 전통무용 개념을 정리하자면, 전통무용은 “그것을 창조, 유지, 전승하는 공동체, 집단, 혹은 개인이 그렇게 인식할 때” 성립이 되며, 따라서 전승의 주체자, 내부자적 관점, 공동체의 인식과 결정이 중요하다.

한편, 무용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전통무용 종목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세기 중반에 창작된 한국무용 종목들이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로 무형문화재의 전통무용 개념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한국춤문화자료원(2020)은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정의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규정, 그리고 무용계의 연구 성과 및 의견을 수용하여 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국의 전통무용은 한국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에서 생성 및 재창조된 춤으로 한국의 민족무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전통무용은 조선시대 이래로 현재까지 역사적인 계통을 이루며 전승된 춤으로 그 형식과 체계가 우수하여 예술적, 학술적, 대중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춤을 의미한다.

### Ⅲ. 무용계 의견 수렴을 통한 '전통무용'의 범주 고찰

#### 1. 무용계 의견 수렴의 방법

'전통무용'의 범주를 고찰하기 위해 현장에 활동하는 무용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퍼실리테이션(집단 참여 토론을 통한 의견 수집 및 종합), 둘째, 무용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셋째, 무용전문가 집단의 표적집단면접(FGI: Focused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 1) 무용전문가 대상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션은 집단 참여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집 및 종합하는 방법이다. 2020년 (사)한국춤문화자료원은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무용계 의견을 모색하기 위한 첫 출발로 서울시에 소재한 무용과 강사,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퍼실리테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 시: 2020년 11월 4일 오후 2시
-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본관 강당
- 참가자: 총 22명 70대(2명), 60대(1명), 50대(4명), 40대(5명), 30대(4명), 20대(6명)

퍼실리테이션은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단일 의제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무용' 개념과 범위는 무엇인가?”를 갖고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양한 계층의 무용인의 토론 과정을 참여하고 관찰을 통해 도출된 '전통무용' 범주에 대한 무용인 의견의 핵심 키워드는 #보존 #춤 #가치 #지속성 #역사 #계승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무용인의 토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전통무용' 범주에 대한 의견

질문	토론내용 정리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무용' 개념과 범위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출수 있는 춤</li> <li>○ 장단에 춤추는 춤</li> <li>○ 몸으로 이어지는 민속(서민)춤</li> <li>○ 역사적 중요 변환기-후대 영향을 미치는 춤</li> <li>○ 문헌고증 현존 춤</li> <li>○ 노동요를 부르며 추는 춤</li> <li>○ 버선코가 살아 숨 쉬는 춤</li> <li>○ 생활춤</li> </ul>

자료출처 : (사)한국춤문화자료원(2020). '전통무용' 분야 종목 전국 자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 2) 무용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무용계 의견을 모색하기 위한 2단계 연구방법으로 전국의 전문가 집단(교수, 문화재 지정 전수조교, 보존회 회장, 이수자)에서 8명을 추출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코로나가 악화된 시점이었으므로 직접면담과 더불어 전화면담 및 화상면담을 병행하였다.

○ 기 간: 2020년 11월 29일 ~ 2020년 12월 14일
○ 방 법: 직접면담, 전화면담, 화상면담
○ 전 문 가: 무용전문가 8명으로 개인 신상보호법에 따라 <표 2>에서는 전문가 1, 전문가 2 ... 전문가 8로 기재함.
○ 질문내용: 1) 무형문화재로서 '전통무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2) 신무용이나 근현대 무용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표 4. 전문가 8인의 심층면담 중 관련 내용

대상/일시	전문가 12 / 2020.11.29.
질문 1 구체적인 진술	“창작/변주/수용 등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무용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결국은 기존에 구비된 무형문화재 제도의 법적적 부분(자격요건)에서 중시하는 부분. 즉 원형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b>창작의 범주가 무형문화재의 자격요건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b> 봅니다. 이 밖에 무용 자체가 지닌 지역성, 예술성, 학술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 2 구체적인 진술	“어떤 무용이라도 결국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역사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역사성을 고증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이는 어디까지나 근대무용일 뿐, 전통무용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이른바 “신전통”이라는 개념은 그 역사적 원류와 맥이 고증되지 않으면 단순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욕심에서 우리나라 주장에 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전통의 수용을 위해서는 이들 무용이 가진 동시대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뒤 <b>그 역사적 원류와 맥을 규명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b> ”
대상/일시	전문가 2 / 2020.12.10.
질문 1 구체적인 진술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이후 전승된 약 50-100여 년 이내에 전승되었던 춤들 가운데, 그 형태가 정체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파고든 것을 전통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용 가운데 부채춤 등도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b>현재 민속무용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지정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b> ”
질문 2 구체적인 진술	“기법과 몸짓 면에서 최소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전래 되는 것은 역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계승하고 있는 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합니다. <b>전통은 꾸준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근대성이 다소간 있더라도 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b> 생각합니다.”
대상/일시	전문가 3 / 2020.12.10.
질문 1 구체적인 진술	“우선 전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고유의 개념이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및 기타 문화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창출된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통이란 신/구의 만남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20세기 이후의 역사적 굴곡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을 살려 복원하는 것만을 전통무용이라고 보았고, 그 때문에 그간 가장 근 과거인 조선시대의 무용을 집중적으로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900년 이후에 등장한 무용들도 사라져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b>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도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통무용의 범위 설정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b> 생각합니다.”
질문 2 구체적인 진술	“부채춤을 비롯한 초기 근대무용(신무용 및 기타 민속무용) 역시도 당대 사람들의 창작성과 예술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역시 적절한 기준과 개념을 정하여 전통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형성에 대한 논의도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성, 즉 본질에 대한 문제는 항상 당대의 기준에 맞추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고 봅니다. 사실 버선발 벗어던지며 시작한 한국 근현대 무용도 30, 40년 뒤에는 전통무용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발레가 Pull-up의 기본기를 갖고 있는 한 여전히 발레이듯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호흡법, 보법, 몸 움직임 원칙 등등이 희석되지만 않는다면 대체로 한국 전통무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를 지닌 무용들이 모두 전통무용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무용이 가진 가치를 따질 기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b>전통의 설정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b> 생각합니다.”

표 4. 전문가 8인의 심층면담 중 관련 내용 (이어서)

대상/일시	전문가 4 / 2020.12.11.
질문 1 구체적인 진술	“전통무용이라는 개념과 범위는 일단 전통이라는 개념이 세대 간에 걸쳐 내려오는 물질적, 정신적 문화 일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무용의 범위는 현대에 좀 더 유연해졌기 때문에 공적인 해석과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 다소 충돌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무용의 경우 장르별, 분야별로 독특한 측면들이 있어서 단순히 연체부터 연체까지를 전통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무용의 경우 기방문화, 교방문화, 근대 이후 신무용 등등 서로 다른 전통이 있으므로, 이 중 딱 하나만을 전통이라고 부르기는 곤란합니다. 한국의 역사에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b>전통의 범위도 들쭉날쭉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b> 생각합니다.”



질문 2 구체적인 진술	“일단은 신무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고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한성준-한영숙 류의 춤들도 신무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사회의 정신을 내재하면서 동시에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면 지정되어 보호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어 현재 해외 한인사회에까지 퍼져있는 배우자 류의 신민요춤 같은 사례처럼, 해외에 잔존하는 한국계 춤들도 디아스포라적인 관점에서 광의적인 전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부채춤이나 최승희 류의 “한국춤” 같은 경우는 서양의 기법도 사용했을뿐더러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 것에 대한 시각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본 동양(오리엔트)에 대한 시각, 혹은 일본을 통해 투영된 한국이라는 왜곡된 미학에 의거해 만들어진 무용이라는 한계가 명백하므로, 이를 전통무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b>신무용과 신경향 춤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 ”
대상/일시	전문가 5 / 2020.12.13.
질문 1 구체적인 진술	“우선 민속적인 입장에서 오랫동안 민중에 의해 전승되어 온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전통의 원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무용 역시 민속춤을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전 기록에 남은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1900-1910년 전후하여 기록에 등장하거나 전승되기 시작한 춤, 교방 계열, 야류, 무속, 농악 등에서 추어졌던 춤들로 지금까지 전승되는 춤들 혹은 기록되었던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방가요> 등의 고전 자료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 구체적인 진술	“당장 직접적인 무형문화재로까지 지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추후의 지정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원로들이 보이는 신무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가령 왜색 운운하는 평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신무용과 전통무용의 관계는 일종의 사실혼 관계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창원-마산-진해의 기방 등지에서 활동한 이들 가운데는 일본이나 서양에서 유입된 신무용을 전승 받아 추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춤사위나 무용에 대한 이해 역시 참고용으로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들 역시 인터뷰나 면담조사에 극도로 소극적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만한 보조적인 수단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전쟁을 통해 여러 신무용가(송병, 김백봉 등)들이 피난을 내려와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춤 지평을 바꾼 것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현대까지 전해 내려온 춤들의 역사성을 어떤 식으로든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일시	전문가 6 / 2020.12.14.
질문 1 구체적인 진술	“한마디 말로 정리하자면 <b>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몸짓과 생활 속에서의 춤이 곧 전통무용이라고 하겠습니다.</b> 그런데 개념과 범위는 결국 한목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무형문화재에는 별도의 자의적인 단서조항이 붙게 되는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춤을 추던 어른들은 춤을 생계 혹은 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래의 지정 조건에서 강조되는 전통성, 지역성, 연계성, 지속성 등들도 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계성과 지속성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질문 2 구체적인 진술	“한국 신무용과 근현대 무용 모두 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위 한국에서의 현대춤이라는 것도, 결국 그 표현 양식이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적인 사고와 입장을 가진 무용가에 의해서 창작, 안무된 것이기 때문에 먼 훗날에 가면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김백봉 화관무는 현재 명작무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한국 사람의 정서와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면 충분히 문화재로 승격하여 정식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 가부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표 4. 전문가 8인의 심층면담 중 관련 내용 (이어서)

대상/일시	전문가 7 / 2020.12.14.
질문 1 구체적인 진술	“전통예술은 간단히 말해 장구한 세월이 거쳐서 농축되어 온 우리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예술이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지방에 따라서 엄정한 형식과 유파가 생겨났는데, <b>전통무용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체계로 예술성을 만들고 원형성 보존이 된 것들 위주로 전통무용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 특히 한국적인 기교, 정신, 특성이나, 예술성, 대중성, 형식성 등등이 검증된 것들이어야 합니다.”
질문 2 구체적인 진술	“기존에 무형문화재 제도에서 암묵적으로 준수되어 온 100년 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김백봉 부채춤과 같이 우수한 신무용들도 어느 정도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 무용도 세월이 지나면서 무용의 역사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예술 자산이므로, 이들 무용들 중 특히 오랫동안 잘 내려온 것들은 그 역사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명작무 등등의 제도나 이북 5도 지방문화재로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 우선적인 후보가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로들이 춘 <b>명작무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서양식이므로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한 검증과 기준이 필요합니다.</b> ”
대상/일시	전문가 8 / 2020.12.14.
질문 1 구체적인 진술	“현재 유존하고 있는 무용들 가운데 뼈대/가계(사승관계)가 있고 독특한 특징을 간직하며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려온 무용을 전통무용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 원로 선생님들께 배울 당시에는 생겨난지 100년 이상 된 춤들만 계승성과 역사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b>태평무 같은 사실상의 창작무용이 그 예술</b>

	성을 인정받아 지정을 받은 것이나, 이후 세대에서 춘추전국시대마냥 수많은 무용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100년이라는 연도는 다소 작위적인 면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도 계속 예술성이 높게 유지되는 춤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가계의 흐름처럼 역사성과 계승성이 뚜렷하게 인정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특장들이 적어도 3대 이상 각각 축적되어 남아있는 것들이 여전히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놓고 싸우는 환경이 된 것이 아쉽지만, 각 무용가에 의한 발전적인 변화를 계승성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도 진정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구체적인 진술	“근대 신무용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에 만들어진 이른바 신전통 계열에 속하는 춤들도 전통의 특징을 살려서 새롭게 창작한 작품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잠정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전통춤”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무용이었으므로, 단순히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좋은 춤들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하더라도 역사성과 계승성을 가진 작품들(부채춤 등)은 충분히 지정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출처 : (사)한국춤문화자료원(2020). '전통무용' 분야 종목 전국 자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3) 무용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무용계 의견을 모색하기 위한 3단계 연구방법으로 심층면담에서 제기된 논쟁 사항을 추출하여 전국의 전문가 집단(교수, 문화재 지정 전수조교, 보존회 회장, 이수자)에서 5명을 추출하여 소규모 F.G.I.을 실시하였다.

○ 일 시:	2020년 12월 13일 오후 3시~5시
○ 장 소:	(사)한국춤문화자료원
○ 전 문 가:	무용계 전문가(교수, 무용평론가, 무용단체장, 예술원회원) 5명으로 개인신상보호법에 의해 <표 5>에서는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로 기재함.
○ 질문내용:	'전통무용' 범주 관련 질의와 답변만 제시함(연구와 무관한 답변의 전문가 D, E 의견은 제시하지 않음).

표 5.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중 관련 진술 일부

일시/구분	2020.11.29. / 구체적인 진술
전문가 A	전통무용의 범위 설정에서는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예술성과 고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것은 바로“원류”와 아류”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전승 자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면 원류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이 자꾸 다듬고 자의식을 가지고 변형한 것은 아류라고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B	개인적으로는 현대 한국무용인들이 많이 추는 종목 가운데 역사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들에 한해 전통무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통무용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근대 이후의 춤(신무용 등) 가운데 제시되는 “한국 창작춤”혹은 “신전통”이라는 개념의 모호함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칠게 정리하면, 한국 창작춤이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고, 신전통은 “기존의 전통적인 요소에 기반해서 근대 이후의 특정 무용가가 창작 혹은 개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C	전통은 인간을 역사적인 존재로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무용 역시 한국 무용계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한 역사적 존재로 만드는 작품에 대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출처 : (사)한국춤문화자료원(2020). '전통무용' 분야 종목 전국 자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표 6.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중 전통무용의 범주에 관한 의견 종합

질문	토론내용 정리
전통무용의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그러나 적어도 70년 또는 100년 이상의 시간에서 전승된 것.
전통무용의 개념	이 자체가 근대화의 산물이며, 근대의 창작성과 예술성도 전통무용의 개념으로 포함해야 함.
전통무용의 전승	현실적으로 연계성과 지속성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3세대 이상의 전승 및 사승관계가 검증되어야 함.
전통무용의 양식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호흡법, 보법, 몸 움직임 원칙 등등이 희석되지만 않는다면 대체로 한국 전통무용으로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서양의 기법 및 서양적 시각에서 재단한 한국미학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반면, 기방춤에도 서양에서 유입된 기법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또한 일본에서 유입한 신무용도 당시 한국적인 사고와 입장에서 한국 신무용으로 창출하였음(국민의 정서와 시대를 반영).

복합장르적인 전통무용	연희, 놀이, 음악 등과 복합된 장르에서 춤을 구분하여 별도 지정하는 것은 춤의 사멸을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거나 독립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일 것임.
전통무용의 원형과 변형 그리고 재창조	원형성이 일차적으로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지나친 원형성 강조의 문제로 발전적 계승이 어려움. 엄정한 형식과 유파, 검증된 예술성, 대중성, 형식성, 원형성 보존이 된 것은 문화재 지정의 가치가 있음 .

자료출처: (사)한국춤문화자료원(2020). '전통무용' 분야 종목 전국 자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 2. 무용계 의견수렴의 결과 논의

무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 심층면담, F.G.I.를 실시한 후 녹취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논의 사항을 추출하였다.

### 1) 역사성에 대한 기준

100년 이상 혹은 3세대 전승이라는 객관적 측정지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그 시간적 완화의 범위는 100년에서 70년, 보유자 사후 30년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춤에 한국 고유성 존재 여부가 문제인지 논의 필요하며, 복고주의뿐만 아니라 사적 창작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 2) 변용 및 재창조에 대한 허용 기준

전승된 춤의 창작 혹은 변형 인정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신무용, 신전통춤, 신경향의 춤 및 전통 기반 창작 춤 등 전통춤을 변용한 춤의 인정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서양 무용으로 훈련받은 신무용 1세대 무용가들의 창작 작품이나 전통춤을 소재로만 대상화한 1950년대 이후 창작 작품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변용의 지나친 인정은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변형, 훼손, 날조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과 반면, 원형성의 지나친 강조는 발전적 계승을 방해할 수 있고, 전통춤의 박제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무용 공연계의 수요를 고려해서 전통춤으로 훈련받은 무용가들이 전통춤을 무대 환경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춤, 무용가들은 물론이고 대중들의 호응도가 높은 전통 재구성 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 I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무용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재고찰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무용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인들은 전통무용의 역사적 수용 범위는 100년에서 70년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보유자 사후 30년 등으로 수치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춤에 한국 고유성 존재 여부가 문제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둘째, 무용인들은 신무용, 신전통춤, 신경향의 춤 및 전통 기반 창작춤 등 전통춤을 변용한 춤의 인정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서양무용으로 훈련받은 신무용 1세대 무용가들의 창작 작품이나 전통춤을 소재로만 대상화한 1950년대 이후 창작 작품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변

용의 지나친 인정은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변형, 훼손, 날조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으나 반면, 원형성의 지나친 강조는 발전적 계승을 방해할 수 있고, 전통춤의 박제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용 공연계의 수요를 고려해서 전통춤으로 훈련받은 무용가들이 전통춤을 무대 환경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춤, 무용가들은 물론이고 대중들의 호응도가 높은 전통 재구성 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통춤의 대표적인 살풀이춤, 승무, 태평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발전되어 전승되었으며, 예능보유자 자신들에 의해 시대적 무용의 변화에 따라 재창조됐다는 사실적 근거를 보았을 때 그것이 오늘날 전통춤의 바탕이 되었고, 한국무용에 있어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대시대 춤의 포함 여부나 전통에 근거한 창작춤의 포함 여부에 대해 무용인들의 대부분은 근대대의 춤도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전통춤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또한 전통춤 분야에서 신규 종목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가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 지원·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문화재청 보도자료, 2009).

우리 헌법에서는 문화국가의 원리 혹은 국가의 문화정책을 강조하는 조항들이 있는데(헌법 전문, 제9조) 이때 문화정책은 문화 ‘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재 제도권에서의 전통무용의 범주 확대는 전통춤을 향유하는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법령 검토 및 질적 조사에 의존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계량화된 자료가 부족하여 개념과 범주의 일반화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통춤의 풍토조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비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를 통해 전통무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확보하고, 전승 현장 종사자들과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1989).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2: 승무·살풀이춤(경남·북편).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 김선영(2004).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정책 및 현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선영(2007).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방안: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 미(2018). 무형문화재 원형과 전형에 대한 고찰. 무형유산학회지. 3(1), 7-27.
- 박 미(2021). 무형문화재 무용의 전형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 백재화(2005). 한국전통무용가들이 인식하는 춤의 특징에 관한 철학적 연구. 우리춤과과학기술. 1, 183-201.
- 서문현(2017).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무용부문> 운영 현황에 따른 발전 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사)한국춤문화자료원(2020). '전통무용' 분야 종목 전국 자원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세종시: 문화재청.
- 송미숙, 윤혜미(201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전통무용 전승환경 연구. 한국무용연구학. 37, 9-120.
- 신민서(2020). 전통무용의 저작권 보호와 한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미희, 김운미(2016). 국가무형문화재 무용분야 보존을 위한 과학적 대안. 우리춤과과학기술. 34, 9-39.
- 이승주, 공상희(2018). 국가무형문화재 범주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32(3), 59-81.
- 이하나(2013). '대한민국', 재건의 시대(1948~1968). 서울: 푸른역사.
- 임수경(2014). 민족의 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서울: 임수경의원연구실.
- 정상우(2009).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법제과제. 법제연구. 36, 407-436.
- 장수민(2017).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전승 고찰: 전통춤 분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인호(2014). 한국 전통춤 사위 용어의 특성 및 표준화 탐색: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재만(1993). 전통무용기법 분석에 관한 연구: 한영숙류 살풀이 춤사위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논문집. 34, 423-446.
- 허 영(2008).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황주희(2004). 전통무용 원형보존에 의한 문제점과 제도적 수용방안 연구(살풀이, 승무, 태평무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황희정(2017).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의 양립 가능성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46, 37-53..
- <기타>
-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2009.9.30.). 보도자료.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법 독립...“유네스코에 맞게 손질”. (2015.03.04.). 서울신문. (검색일자: 2022.04.0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04800049>.
- 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 (2016, 2018, 2020). 문화재청.
-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2019.9.6.). 보도자료. 문화재청.

## ABSTRACT

##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and Category of 'Traditional Dance' for Kore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unjung Kim\*\* Dankook University · Haereec Choi\*\* The Korea Dance Resource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e for the new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the field of dance by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category of traditional dan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approached it from two aspects. First, the changes in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UNESCO Convention for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re examined, and through this, the concept of traditional Korean dance was established as follows. Korean traditional dance is a dance created and recreated in a national and cultural community called Korea (ROK), and can be said to be a Korean national dance. In particular, the traditional dance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s the dance that has been passed down in a historical lineage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present, and has excellent form and style, which means the dance that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rtistic, academic, and popularly. Second, the category of traditional dance as an intangible heritage was consider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opinions of dance experts using facilitation (collection and synthesis of opinions through group participation discussion), in-depth interviews, and FGI (Focused Group Interview).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Numerical mitigation is needed, such as adjusting the recognition of the transmission period of traditional dance from 100 years to 70 years. (2) Various creative dances based on traditional dances, such as new dances (Sinmuyong), Korean creative dances (Hanguk changjakchum), and new traditional dances (Sin-jeontongchum) that have occurred since modern times, could be considered as traditional dances. In conclusion, the new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the dance field require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dance community's agreement on the concept and category of traditional dance, which is the criteria for select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Key words** :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cep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Category of Traditional Dance

논문투고일: 2022.05.31

논문심사일: 2022.06.30

심사완료일: 2022.07.20

\* 영문으로 내용 누락!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무용과 교수 dance@hanmail.net

\*\* 영문으로 내용 누락! (사)한국춤문화자료원 이사장 haereec@kakako.com